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24
------------	-----

2016. 03. 03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년 12월 2일 김정태 의원

나. 회부일자 : 2015년 12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6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6.3.3.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정태 의원)

### 가. 제안이유

한옥 등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자산의 보존을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2739호, 2014. 6. 3. 공포, 2015. 6. 4. 시행, 이하 ‘법’이라 한다)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299호, 2015. 6. 1. 공포, 2015. 6. 4. 시행, 이하 ‘령’이라 한다)이 제정됨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건축에 대한 지원”,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지원” 등 법 및 영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우수건축자산 발굴(안 제2조)
-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안 제3조)
- 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4조)
-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안 제5조)
-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소요비용의 지원(안 제6조)
- 우수건축자산 특례적용계획서 작성(안 제10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지원(안 제11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안 제13조)
-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안 제14조)
- 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안 제16조)
- 한옥지원센터의 설치(안 제18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참조

다. 기 타 : 제정조례안(별첨), 담당부서별 검토의견(별첨)

## 4. 검토보고의 요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 배경 및 구성

- 이 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 제정 ·

시행됨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2015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한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의 공동발의로 2015년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sup>1)</sup>

- 조례안의 구성은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관련 등(안 제2~4조),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소요비용 지원(안 제6~9조),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지원(안 제11~13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안 제14조), 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안 제16조), 한옥지원센터의 설치 및 건축자산의 진흥(안 제18조) 등 총 18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음.

## □ 주요내용 및 검토사항

### 가.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관련 등(안 제2~4조)

- 영 제3조 제5항<sup>2)</sup>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조례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법 제8조<sup>3)</sup>에서 명시한 건축자산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그대로 반영하되 “서울 한옥장인 인증제”를 도입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세부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한 사항임.

- 
- 1) 한옥지원특별위원회는 한옥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보호·지원과 역사·문화보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2014년 12월 19일부터 활동 중임.
  - 2) 영 제3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⑤ 시·도지사는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3) 법 제8조(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유지·보수 및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인력의 수급에 관한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축자산의 보전, 활용 및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안 제3조)**

1.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의 시행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계획의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 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나.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소요비용 지원(안 제6~9조)**

-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조례감면을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시행할 수 있게 하고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기 위해 용자 및 보조금의 한도액을 현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와 동일하게 “외관수선의 경우 공사비용의 3분의 2범위 내 최고 6천만원 보조지원”, “내부수선의 경우 공사비용 범위 내 최고 4천만원 용자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 개정조례안의 용자 및 보조금 한도액 수준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안 제14조)**

-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옥밀집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한옥”과 영 제17조제1항4)과 같

4) 영 제17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한옥마을은 일단(一團)의 범

이 10호 이상이 연계되어 있는 “한옥마을”, 법 제2조제3호<sup>5)</sup>에 따른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지원수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옥 건축의 경우 기존 조례 지원수준의 80퍼센트 범위 내에서 보조 및 융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향후 시행예정인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건축자산 진흥 실행 계획”을 바탕으로 한 비용추계를 추가적으로 시행하여 보다 면밀한 보조 및 융자액 한도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라. 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안 제16조)

- 법 제36조<sup>6)</sup>에 근거하여 건축자산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참고로 예산편성 주관부서(예산담당관)는 “건축자산특별회계”

---

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5)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

6) 법 제36조(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건축자산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자산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건축법」 제80조의 이행강제금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시행계획에 필요한 비용
2.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보급에 필요한 비용
3. 건축자산의 보전·건축에 대한 지원
4.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자료의 제작·배포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필요한 비용

신설시 자체수입보다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주요 세입원이 될 것이라는 점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 일몰제(5년) 적용 등으로 특별회계 신설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 밖에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사업 관련 도시재생기금은 아직 조례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음.

#### 마. 한옥지원센터의 설치 및 건축자산의 진흥(안 제18조)

- 제3기 한옥자산선언('15.6)에 따라 한옥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지원을 위한 “한옥지원센터” 설치를 명시한 조항으로써 법 제28조 “국가한옥센터 설치” 조항을 준용하여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한 것임.
  - 다만 안 제18조제5항(“시장은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은 이 조례안 제2조 “시장의 책무”와 중복되는 조항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령」 시행에 따른 입법조치로, 관련조례인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와 용자 및 보조금 지원·지원대상 등 일부 구성 및 내용이 유사하나, 현재 상위법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상태라는 점과 이에 따른 각 시·도 단위의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실행계획 수립이 진행되기 전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한시적으로 두 조례가 함께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통합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음.
- 또한 이 조례안 중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를 위한 용자 및 보조금 한도액의 경우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지

원 수준과 동일하게 규정한다, 관련조례의 개정조례안과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심사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924
----------	-----------

2016년 3월 3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1. 수정이유

-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을 위해 한옥 및 한옥마을의 지원범위와 수준 등을 수정하고 우수건축자산 등을 매입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그 외 일부 조문의 자구 정정 등 보완사항을 반영함

## 2. 수정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를 재규정 함 (안 제2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변경 근거를 수정함(안 제12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운영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 제14조)
-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수준을 정비함(안 제15조)
- 우수건축자산 등을 매입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
- 법 제36조에 따른 건축자산특별회계 설치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
- 한옥 등 건축자산 지원센터 설치규정을 정비함(안 제20조)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법률”을 “법”으로 한다.

안 제2조 중 “건축자산 및 건축물의 진흥을 위해 개별건축자산 및 우수건축자산의 발굴에 노력하고, 건축자산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를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서울 한옥장인 인증제 도입’ 및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등을 통해 우수한 한옥건축을 유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를 “서울한옥장인인증제 등 관련 제도 도입 및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로 하되 본문 외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안 제5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가 인정한”을 “시장이 인정하는”으로 하고, “지역산업 관련 종사자”를 “지역산업 관련 사업자”로 한다.

안 제6조제5항 중 “융자액의 융자 및 상환조건은”을 “보조 및 융자 대상과 상환조건 등은”으로 한다.

안 제12조 본문 중 “법 제19조제1항제5호·제6호·제7호의 내용

중”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 4항 각호 외의 사항으로”로 한다.

안 제14조제1항의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한옥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 밀집지역(이하 “한옥밀집지역”이라 한다.) 외 한옥

안 제14조제3항제1호 중 “에 따른 지원금액의 80퍼센트 범위 내에서 보조 및 융자지원”을 “의 범위 내에서 보조 및 융자지원”으로 한다.

안 제14조제4항 중 “한옥의 지원”을 “한옥의 지원 등”으로 하며 제 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조성되는 한옥마을 및 조성 이 완료된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안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우수건축자산 등의 매입) 시장은 우수건축자산 및 건축 자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우수건축자산으로 인정되는 건축자산에 한정한다.)을 매수하여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안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건축자산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안 제17조를 제18조로 한다.

안 제18조를 제19조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중 “한옥지원센터”를 “한옥 등 건축자산 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옥 지원센터”를 “한옥 등 건축자산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한옥지원센터에서는”을 “센터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한옥지원센터”를 “센터”로 하며, “별도로 정한다.”를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 □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시장의 책무)</b>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건축자산 및 건축물의 진흥을 위해 개별건축자산 및 우수건축자산의 발굴에 노력하고, 건축자산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u></p> <p><b>제4조(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b> ① 시장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u>서울 한옥장인 인증제 도입</u>’ 및 <u>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등을 통해 우수한 한옥건축을 유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u></p> <p>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별도로 정한다.</u></p> <p><b>제5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b> (생략)</p> <p>1. ~ 2. (생략)</p> <p>3. <u>서울특별시가 인정한 장인·목수 등 지역산업 관련 종사자</u></p> <p><b>제6조(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소요비용의 지원)</b></p> <p>① ~ ④ (생략)</p>	<p><b>제1조(목적)</b> ----- ----- <b>법</b> ----- -----</p> <p><b>제2조(시장의 책무)</b> ----- ----- <u>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u></p> <p><b>제4조(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b> -- ----- ----- <u>서울한옥장인인증제 등 관련 제도 도입 및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u></p> <p>〈삭제〉</p> <p><b>제5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b> (제정안과 같음)</p> <p>1. ~ 2. (제정안과 같음)</p> <p>3. <u>시장이 인정하는</u> ----- <u>지역산업 관련 사업자</u></p> <p><b>제6조(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소요비용의 지원)</b></p> <p>① ~ ④ (제정안과 같음)</p>

<p>⑤ 제4항에 따른 <u>용자액의 용자 및 상환조건</u>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⑤ 제4항에 따른 <u>보조 및 용자대상과 상환조건</u> 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12조(건축자산 <u>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변경 등</u>)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안의 중요한 사항이란 <u>법 제19조제1항제5호·제6호·제7호의 내용 중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u>을 말한다.</p>	<p>제12조(건축자산 <u>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변경 등</u>) ----- ----- 「<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25조 제4항 각호 외의 사항으로 ----- ----- -----</p>
<p>제14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옥 및 한옥마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한옥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의 한옥의 등록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한옥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 밀집지역(이하 “한옥 밀집지역”이라 한다.)</u> 외 한옥</li> <li>2. ~ 3. (생략)</li> </ol> <p>② (생략)</p> <p>③ 제2항에 따른 보조 및 용자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옥밀집지역 외 한옥 : 한옥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제2호·제3호에 따른 지원금액의 80 퍼센트 범위 내에서 보조 및 용자지원</li> <li>2. (생략)</li> </ol>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14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옥 및 한옥마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한옥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 밀집지역(이하 “한옥밀집지역”이라 한다.) 외 한옥</li> <li>2. ~ 3. (제정안과 같음)</li> </ol> <p>② (제정안과 같음)</p> <p>③ 제2항에 따른 보조 및 용자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옥밀집지역 외 한옥 : 한옥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제2호·제3호의 범위 내에서 보조 및 용자지원</li> <li>2. (제정안과 같음)</li> </ol> <p>④ <u>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조성되는 한옥마을 및 조성이 완료된 한</u></p>

④ 한옥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옥보전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이 경우, 한옥위원회는 건축위원회로 본다.

〈신설〉

제15조(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생략)

제16조(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건축자산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자산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사업 관련 도시재생기금
4. 한옥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의 용자지원 상환금
5. 영 제11조제2항제2호의 보조금·용자금 반환금 또는 상환금
6. 법 제3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7. 법 제3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그 밖의 수입금

옥마을에 대해서는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한옥의 지원 등-----  
-----  
-----  
-----

제15조(우수건축자산 등의 매입) 시장은 우수건축자산 및 건축자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우수건축자산으로 인정되는 건축자산에 한정한다.)을 매수하여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제정안과 같음)

제17조(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건축자산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도별 건축자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경비
2. 건축자산 기초조사에 필요한 경비
3. 건축자산의 보전·건축에 대한 지원
4. 우수건축자산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
5.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협의체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
7.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에 필요한 경비
8. 건축자산 진흥구역 및 우수건축자산, 한옥 및 한옥마을에 관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9. 한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10.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
11. 그 밖에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생략)**

**제18조(한옥지원센터의 설치 및 건축**

자산의 진흥) ① 시장은 한옥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현장지원을 위해 한옥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한옥지원센터에서는 현장형 한옥 개·보수 상담, 점검 보수, 다양한 교육, 기술연구, 한옥박람회 등 산업화 추진 등을 통한 현장에서의 한옥지원 거점 역할을 한다.

③ (생략)

④ 그 밖에 한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⑤ 시장은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제정안과 같음)**

**제19조(한옥 등 건축자산 지원센터의 설치 및 건축자산의 진흥) ①** -----

----- 한옥 등 건축자산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② 센터는 -----  
-----  
-----  
-----  
-----

③ (제정안과 같음)

④ ----- 센터-----  
-----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삭제>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의 시행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계획의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 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4조(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한옥장인인증제 등 관련 제도 도입 및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
2. 한옥건축자재를 취급하는 소매업자
3. 시장이 인정하는 장인·목수 등 지역산업 관련 사업자

제6조(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소요비용의 지원)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은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2.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
3. 우수건축자산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우수건축자산의 유지·보수 관련 사업

5. 우수건축자산의 관광 자원화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및 융자지원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관수선의 경우 : 공사비용의 3분의 2 범위 내에 최고 6천만원 범위 안에서 보조지원

2. 내부수선의 경우 : 공사비용의 범위 내에 최고 4천만원 범위 안에서 융자지원

⑤ 제4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대상과 상환조건 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6개월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시기)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조지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6조제3항에 따른 용자지원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그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 또는 용자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의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하거나 용자지원액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

2. 제7조에 따라 보조 또는 용자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지원결정 내용과 달리 집행하여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특례적용계획서)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우수건축자산의 주요 가치 유지 방안
2. 주변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서
3. 특례 적용 및 미적용 시를 비교할 수 있는 개략설계도서

제11조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하수도시설, 주차장, 보안·방범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
2.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
3. 도서관,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지시설

제12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변경 등)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안의 중요한 사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호 외의 사항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말한다.

제1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①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주민
2. 시민단체
3. 한옥 및 건축자산 관련 위원회 위원
4. 도시계획·건축 등 건축자산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간사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협의체가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예산을 지원받은 협의체는 매년도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옥 및 한옥마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한옥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 밀집지역(이하 “한옥밀집지역”) 외 한옥

2. 한옥마을

3.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한옥건축양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한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축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및 융자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밀집지역 외 한옥 : 한옥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제2호·제3호의 범위 내에서 보조 및 융자지원

2. 한옥건축양식 : 공사비용의 범위 내에 최고 4천만원 범위 안에서 용자지원

④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조성되는 한옥마을 및 조성이 완료된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 시설의 설치·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한옥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옥보전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이 경우, 한옥위원회는 건축위원회로 본다.

**제15조(우수건축자산 등의 매입)** 시장은 우수건축자산 및 건축자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우수건축자산으로 인정되는 건축자산에 한정한다.)을 매수하여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에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후 신청된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17조(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건축자산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권한의 위임·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제13조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소요비용

의 용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9조(한옥 등 건축자산 지원센터의 설치 및 건축자산의 진흥)

- ① 시장은 한옥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현장지원을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현장형 한옥 개·보수 상담, 점검 보수, 다양한 교육, 기술연구, 한옥박람회 등 산업화 추진 등을 통한 현장에서의 한옥지원 거점 역할을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구청장, 한옥장인·전문가 및 관련기관(국가한옥센터, SH공사 등)과 함께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